

감사 보고 통

제 목 규제개혁장관회의 과제 이행관리 부적정
소 관 청 국무조정실
관 계 기 관 국무조정실
내 용 국무조정실 및 환경부 등 중앙행정기관은 2014. 3. 20.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수립된 정체과제(52개) 이행을 추진하고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에서 마련한 '규제개혁장관회의 전의과제 처리 프로세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에서 전의사항을 접수하여 과제 추진 등을 담당할 각 부처에 통보하고, 각 부처는 전의과제의 수용 가능성을 확인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에서 수립한 추진계획을 검토한 후 승인하도록 되어 있다. 국무조정실은 이행과제가 선정 취지 및 이행계획에 맞게 추진되었는지 등 추진 성과를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하여 완료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각 과제 담당 부처는 과제가 완료된 이후에도 현장의 추가 애로사항이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규제개혁장관회의 과제가 완료되었더라도 각 과제 담당 부처는 조치

[내용이 일선 현장까지 전달되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해 선정된 과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4. 11. 17.~12. 19.) 중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과제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완료승인된 '푸드트럭 허용' 과제 및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관리지원 강화' 과제는 다음과 같은 미비점이 발견되었다.

가. '푸드트럭 허용' 과제 이행관리 부적정
국무조정실 등1)에서는 소자본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새로운 먹거리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유원시설' 내 푸드트럭2)을 이용한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 개선과제를 추진하였다.

국무조정실 등은 2014. 10. 1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 같은 해 10. 2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푸드트럭 영업 가능지역을 유원시설에서 체육시설, 관광지, 도시공원, 하천부지로 확대하였으며, 국무조정실은 같은 해 11. 12. 각 시·도 등에 영업점찰, 위생·안전 관리 등이 포함된 배뉴얼(이하 "푸드트럭 업무 매뉴얼"이라 한다)을 배포한 후 위 과제를 완료로 처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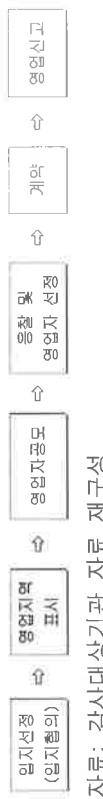
한편 '푸드트럭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영업자 선정절차는 [그림 5]와 같이 시

1) 국무조정실에서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과제 중 다수의 소관 부처가 관계된 5개 과제(① 외국인근로자 고용연동 신고 일원화, ②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 대한 이종신고 통합 개선, ③ 푸드트럭 허용, ④ 제일산업 관련 중복 규제 개선, ⑤ 제임판련 규제신설 논의 중지)의 경우 소관부처와 더불어 규제개혁장관회의 총괄기구3)으로서 관리·집점을 하고 있으며, 푸드트럭 과제는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과제를 추진 중이며 국무조정실이 해당 과제를 총괄하고 있음

2) 자동차를 이용하여 음식 및 재파류 등을 판매하는 시설

설관리주체의 입지 점토(시설관리주체의 입지선정 및 영업지역 표시) 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영업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푸드트럭을 이용한 영업을 위해서는 시설관리주체의 입지 점토를 통한 영업자 공모가 수행되어야 한다.

[그림 5] 푸드트럭 영업신고 절차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그러나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4. 11. 17. ~ 12. 19.) 중 전국 16개 시·도의 푸드트럭 관련 입지 점토 현황을 확인한 결과, 고양시³⁾를 제외하고는 입지 점토를 한 지방자치단체가 없었고, 특히 울산광역시 등 일부(2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천·공원부지 내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입지 점토를 해탈라는 민원 요청⁴⁾이 있었는데도 이를 점토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관하 52개 시·군⁵⁾을 대상으로 입지 점토를 하지 않고 있는 사유를 조사한 결과, [별표 1]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관하 시·군의 푸드트럭 입지 점토 관련 명세”와 같이 52개 시·군 중 30개 (80%) 지역⁶⁾에서 ‘푸드트럭 업무 매뉴얼’이 영업신고를 담당하는 시·군 식품 위생과로만 전달되고 ‘푸드트럭 업무 매뉴얼’이 베포된 시 한 달이 경과한 2014. 12. 12. 까지도 입지 점토를 하여야 할 시설관리부서까지 전달되지 않았고 있었다.

그리고 ‘푸드트럭 업무 매뉴얼’이 시설관리부서에 전달된 22개 시·군의 경우

3) 2014. 11. 5. 입지점토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점토 중

4) 2014. 7. 20. 구체개혁안을고통해 울산광역시 태화강 2호변주차장(하천)에서 푸드트럭으로 커페를 운영하고자 하거나 울산광역시에서 하천내 영업행위는 불법이므로 푸드트럭 영업허가를 해줄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하고 있어 푸드트럭 규제가 풀린 상황에서도 하천부지에 푸드트럭 영업이 불가한지 궁금하여, 영업이 가능하도록 해줄리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2014년 12월 현재까지 이와 유사한 총 4건의 민원이 규제신문고에 접수

5) 서천군, 용성군, 예산군, 서산시, 청진시 등 5개 기관의 경우 입지점토를 하지 아니한 사유 및 접수일자별 제출증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

6) 동일한 시·군에서 시설관리부서가 다수인 경우 2개 이상의 시설관리부서에 전달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로 한정

7) 푸드트럭 업무 매뉴얼이 일부 부서에만 전달된 경우도 포함

에도 기준 상전 준차 등으로 푸드트럭의 영업 수익성이 낮을 것이라는 박연한 추측 및 '푸드트럭 업무 매뉴얼' 접수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푸드트럭 업무 매뉴얼'을 접수만 한 채 해당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사유로 입지 검토에 차수하지 않고 있어⁸⁾ 2014년 12월 현재 유원시설 등에 대한 푸드트럭 영업신고 건수는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규제개선 효과가 저조한데도 국무조정실에서는 이를 완료 과제로 처리한 채 입지 검토 부진원인 파악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조치 등 과제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나.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관리지침 강화'과제 이행 관리 부적정

2014. 3. 20.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⁹⁾ 및 「화학물질관리법」¹⁰⁾ 시행(2015. 1. 1.)에 따른 산업체에 예방 시설 설치 및 노후 제조시설 개선 의무화 등으로 대응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¹¹⁾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다. 환경부 등 관계기관¹²⁾에서 같은 해 3. 8) 입지점토를 하고 있지 않은 57개 시·군 중 화성시·수원시는 이번 감사기간 중 입지점토 계획서를 작성하였고 12개 시·군은 앞으로 입지점토에 체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

9)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이 합유된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일정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평가를 제출하도록 지정하여 환경부장관은 약속서를 청기부하여 유독물·화학물질·화학물질·화학물질·화학물질·화학물을 보호하기 위해 2013. 5. 22. 제정되고 2015. 1. 시행

10) 최근 잇따라 발생한 화학사고로 인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는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자 화학물질에 대한 통제조사 및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 구축화, 화학사고 및 영업허가제 신설 등을 통해 양행관리체계 강화, 화학사고 발생시 즉시 신고의무 부여, 현장조정관 역할 및 특별관리자역 지정 등을 통해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2013. 6. 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제정하고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통합하여 2015. 1. 시행

11) 화학 관련 업체는 16,547개소로 이 중 소기업이 15,955개소(98%)

12)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13) 「환경개선자금 용지사업」(2014년 예산 120억 원)은 기존의 환경개선자금 중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분야를 특별 유동률 이용배관, 저정탱크, 링크로리, 개인보호장구, 방류벽 용량증설, 경보기, 스프링클러를 비롯한 안전 장치 등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2014년 2분기 금리 연 2.87%, 3년 거치 4년 상환, 지원한도 10억 원으로 하며 용지금을 지원하는 사업

27. [표 4]와 같이 기준 각 부처의 노후시설 개·보수 용자·보조 사업과 연계하여 화학물질시설 투자비용 지원 및 중소업체 방문교육·건설팀 등의 화학물질시설 투자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표 4] 화학물질시설 투자비용 지원 등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

구 분	후속조치 계획	
	추진방안	원율(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투자비 지원	각 부처의 노후시설 개보수 용자보조사업과 연계하여 화학물질시설 특지비(총액 2014년 1,915억 원, 원경개선자금 등)를 지원[사업자에게는 시설 설치사업자 보조(2014년 1,915억 원, 원경개선자금 등자 2014년 120억 원) 등]	
내용	건설팀 등	중소업체 방문교육·건설팀 2014년 800개소, 집중기술지도 2014년 10,000개소 등 추진

자료: 환경부 등의 화학물질 지원계획 자료 재구성

그리고 환경부 등에서는 2014. 9. 3. 위 과제의 경우 [표 5]와 같이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언론에 공개하였다.

[표 5] 화학물질시설 투자비용 지원 관련 조치나율

구 분	조치내용	
	추진방안	관계부처유관기관 합동 '화학안전 산업체 지원단'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민관협력 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중소기업 화학안전 관리역량 제고방안 발표(2014. 6. 25. 경제과학정책본부의)
투자비 지원	산업체에 예방시설 설치사업자(2014년 1,001억 원), 클린사업장 보조사업(2014년 944억 원), 혼경기선	
내용	건설팀 등	2014년 800개소의 중소업체를 2014년 120억 원)

자료: 환경부 등에 화학물질 시설 투자비용 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고농도 물질을 취식하여 판매 완료된 것으로 언론에 공개하였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4. 11. 17.~12. 19.) 중 위 과제의 실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환경개선자금' 용지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2014년 미만 업체 133개 대상으로 방문교두를

시 체공하도록 되어 있는 등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 2014년 12월 현재 5개 업장에 14억여 원의 예산이 집행되어 예산 집행률이 전체 예산(120억 원) 대비 11%에 불과하였고, ‘산업체계예방시설 응자사업’은 위와 동일한 사유로 2014년 12월 현재 학학물질시설 투자비용 관련 응자설적이 없었으며,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사업에 대한 흥보 부족 등으로 30개 업체에 화재·폭발 예방설비로 불과 16억 원(예산 대비 0.2%)만이 지원된 상태였다.

또한, 고농도 학학물질을 회석·판매하는 20인 미만업체 133개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및 사고발생 시 조치사항 등을 직접 사업장에 방문하여 교육하는 종소업체 방문교육의 경우 과제 선정 이후 7개월이 지난 2014년 11월까지도 교육수행 강사 선정 및 교육자료 마련 등 사전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2015. 1. 1.)이 임박한 2014년 12월 현재까지 교육을 실시한 기업이 없는 실정이었다.

그런데도 환경부에서는 위 과제의 개선방안 중 실적이 저조한 사업의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앞으로도 위 사업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가장”과 “나중”의 내용과 같이 구체개혁장관회의에서 선정된 일부 이행과제의 개선 성과가 실제 현장에서는 미흡하게 나타나는데도 국무조정실 및 환경부에서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규제 개선 효과의 실효성이 있다.

14) 산업체계예방시설 응자사업은 학학물질시설 이외에 안전보건시설(프레스, 공작기계, 사출성형기, 크레인, 지게차 등을 이용하는 업체)을 설치·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도 연 3%, 3년 거치 7년 상환, 지원한도 5억 원을 기준으로 기관은 학학물질시설도 동일 적용으로 지원

15)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2014년 예산 91억 원)은 기술·체계적 능력이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 10억 원 미만 건설현장에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 등 설비투자 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 현장 등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처하될 우려가 있다.

[별표 1]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관하 시·군의 푸드트럭 입지 검토 관련 명세

□ 업무매뉴얼이 시설담당부서에 전달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명세

연번	광역자치단체(도)	기초자치단체(시·군)	업무매뉴얼이 시설담당부서에 전달되지 않은 시설담당부서	
			시설구현	팀단부서
1	0천시	체육시설	체육시설	체육시설
2	평택시	체육시설	체육시설	체육시설
3	화성시	유원시설	유원시설	유원시설
4	부천시	관광단지	관광단지	체육시설
5	수원시	체육시설	체육시설	체육시설
6	구리시	체육시설	체육시설	체육시설
7	연천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체육시설
8	고포시	체육시설	체육시설	체육시설
9	파주시	체육시설	체육시설	체육시설
10	남양주시	체육시설	체육시설	체육시설
11	광주시	체육시설	체육시설	체육시설
12	하남시	체육시설	체육시설	체육시설
13	포천시	관광단지	관광단지	체육시설
14	고양시	체육시설	체육시설	체육시설
15	안산시	체육시설	체육시설	체육시설
16	안양시	체육시설	체육시설	체육시설

연번	광역자치단체별(도)	기초자치단체별(시·군)	업무매뉴얼이 시설설정부서		시설유형별 담당부서	업무매뉴얼 접수일자	푸드트럭 영업지역 입지검토를 하지 않은 시유
			광역자치단체(도)	기초자치단체(시·군)			
17		안성시	체육시설	체육시설	-	-	2014. 12. 4.
18	충청북도(47)	단양군	체육시설	체육시설	-	-	2014. 11. 17.
19		보은군	체육시설	체육시설	-	-	2014. 11. 18.
20	충청북도(47)	영동군	체육시설	체육시설	-	-	2014. 11. 18.
21		음성군	체육시설	체육시설	-	-	2014. 12. 4.
22		천안시	체육시설	체육시설	-	-	2014. 12. 5.
23		공주시	체육시설	체육시설	-	-	2014. 12. 8.
24		보령시	체육시설	체육시설	-	-	2014. 11. 25.
25		이산시	체육시설	체육시설	-	-	2014. 11. 25.
26	충청남도(94)	논산시	체육시설	체육시설	-	-	2014. 11. 25.
27		계룡시	체육시설	체육시설	-	-	2014. 11. 25.
28		금산군	체육시설	체육시설	-	-	2014. 11. 25.
29		청양군	체육시설	체육시설	-	-	2014. 11. 25.
30		태안군	체육시설	체육시설	-	-	2014. 11. 25.
1		성남시	도시공원	도시공원	-	-	2014. 12. 4.
2		용인시	유원시설	유원시설	-	-	2014. 11. 18.
3	경기도(77)	하천	체육시설	체육시설	-	-	2014. 12. 4.
		의왕시	도시공원	도시공원	-	-	2014. 12. 5.
		하천	관립단지	관립단지	-	-	2014. 12. 8.
4		동두천시	체육시설	체육시설	-	-	2014. 11. 25.
5		기평군	도시공원	도시공원	-	-	2014. 12. 1.
6	경기도(77)	양주시	관립단지	관립단지	-	-	2014. 11. 25.
		하천	도시공원	도시공원	-	-	2014. 12. 16.
7		김포시	도시공원	도시공원	-	-	2014. 11. 25.
8		육천군	체육시설	체육시설	-	-	2014. 12. 4.
9	충청북도(27)	제천시	도시공원	도시공원	-	-	2014. 12. 5.
		하천	관립단지	관립단지	-	-	2014. 12. 8.
10	경기도(17)	광명시	도시공원	도시공원	-	-	2014. 12. 4.
11	충청북도(27)	충평군	체육시설	체육시설	-	-	2014. 11. 20.
		하천	도시공원	도시공원	-	-	2014. 12. 3.
12	경기도(17)	파주시	체육시설	체육시설	-	-	2014. 12. 5.
13	경기도(27)	의정부시	체육시설	체육시설	-	-	2014. 12. 10.
		관립단지	도시공원	도시공원	-	-	2014. 11. 19.
14	경기도(27)	양평군	체육시설	체육시설	-	-	2014. 11. 19.
		하천	업무매뉴얼 접수 시설 미인지	업무매뉴얼 접수 시설 미인지	-	-	2014. 12. 16.

연번	광역자치단체별(도)	기초자치단체별(시·군)		업무매뉴얼이 시설설정부서		시설유형별 담당부서	업무매뉴얼 접수일자	주변 승권 고려 시 수익성 없음 및 기타 (서류 운행 불가, 주차장 없음 등)
		광역자치단체(도)	기초자치단체(시·군)	광역자치단체(도)	기초자치단체(시·군)			
1		인천시	체육시설	체육시설	체육시설	-	-	2014. 11. 17.
2		단양군	체육시설	체육시설	체육시설	-	-	2014. 11. 18.
3		보은군	체육시설	체육시설	체육시설	-	-	2014. 11. 18.
4		영동군	체육시설	체육시설	체육시설	-	-	2014. 12. 4.
5		음성군	체육시설	체육시설	체육시설	-	-	2014. 12. 5.
6		천안시	체육시설	체육시설	체육시설	-	-	2014. 12. 8.
7		공주시	체육시설	체육시설	체육시설	-	-	2014. 12. 8.
8		보령시	체육시설	체육시설	체육시설	-	-	2014. 12. 3.
9		이산시	체육시설	체육시설	체육시설	-	-	2014. 12. 3.
10		하천	체육시설	체육시설	체육시설	-	-	2014. 12. 5.
11		하천	체육시설	체육시설	체육시설	-	-	2014. 12. 5.
12		하천	체육시설	체육시설	체육시설	-	-	2014. 12. 5.
13		하천	체육시설	체육시설	체육시설	-	-	2014. 12. 12.
14		하천	체육시설	체육시설	체육시설	-	-	2014. 11. 19.

주: 시설 관리주체 중 2곳 이상에 업무매뉴얼이 전달되지 않은 시·군만 기재
자료: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출자료 재구성

□ 입지검토를 하지 않은 시유별 지방자치단체 명세

연번	공약지방 자치단체 (도)	기초자치방 지단체(시·군)	시설유형별 담당부서		업무매뉴얼 접수율자	푸드트럭 영업지역 일정표■ 하지 않은 시유
			시설주체	담당부서		
15	충청북도 (27) ¹¹⁾	괴산군	관광단지	-	2014. 11. 20.	
		체육시설	도시공원	-	2014. 11. 20.	
16	진천군	체육시설	도시공원	-	2014. 12. 3.	
		도시공원	도시공원	-	2014. 12. 3.	
17	경기도 (33) ¹²⁾	시흥시	도시공원	-	2014. 12. 4.	
		유원시설	여주시	도시공원	-	2014. 11. 25. 검토 중 및 기대(2인사유지임)
18	경기도 (33) ¹³⁾	오산시	체육시설	-	2014. 12. 3.	
		도시공원	도시공원	-	2014. 12. 3.	
19	충청북도 (27) ¹⁴⁾	충주시	도시공원	-	2014. 9. 26.	
		관광단지	도시공원	-	2014. 12. 3. ※현	
20	충청북도 (27) ¹⁵⁾	충주시	도시공원	-	2014. 12. 11. ※현	
		관광단지	도시공원	-	2014. 12. 12. ※현	
21	충청남도 (17) ¹⁶⁾	부여군	체육시설	관광단지	-	2014. 12. 12. ※현
		도시공원	도시공원	-	2014. 12. 12. ※현	
22	충청남도 (17) ¹⁷⁾	체육시설	도시공원	-	2014. 11. 19. ※현	
		도시공원	도시공원	-	2014. 12. 3. ※현	

자료: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국무조정실장은 '푸드트럭 허용' 과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푸드트럭 입지 검토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검토 부진 원인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